

「전남미래국제고 ‘반쪽개교’ 불가피...유학생 45명 비자 불허」
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- 2. 24.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“전남미래국제고 ‘반쪽개교’ 불가피... 유학생 45명 비자 불허” 기사 및 전남교육청 보도자료 「전남미래국제고 개학전 비자불허 유감, 법무부 비자불허로 학생·학교 피해」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- 현재 고교 이하 미성년 학생비자(D-4-3)는 자비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- 다만, 지방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‘교육나눔’ 및 ‘청소년 국제교류’ 목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초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
- 전남교육청은 “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유학생 비자가 불허된 것과 관련해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내려진 행정조치로 학생과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”고 밝혔으나,
 -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는 지역 취업과 정주를 연계하는 미성년 외국인 학생 유치 관련 교육계 등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‘25년 10월 최종적으로 ‘취업·정주 연계형 미성년 유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중단을 결정’하고, 각 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.
 -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전남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지방 교육청에 미성년 학생 유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으며,
 - 이미 작년부터 정부가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‘25년 10월 사증발급 중단을 결정하였음에도, 일부 지방 교육청에서 미성년 외국인 학생 모집과 비자신청을 강행하였습니다.

- 법무부는 학생비자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2월 2일 교육나눔 목적이 확인되는 일부 학교에게 비자 발급을 승인하면서,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불허 예정임을 설명하였고, '26년 2월 13일 불승인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.

그간의 주요 논의 경과

- ▶ **법무부 주관**으로 관계부처 및 시·도교육청 담당자 간담회 개최('25.6.)
- ▶ **국가인권위원회 주관** 직업계고 유학생 관련 인권정책 간담회 개최('25.9.)
- ▶ 지역 취업·정주 연계 미성년 학생 **비자 발급 중단 결정** 및 시·도교육청 통보('25.10.)
- ▶ **국민권익위원회** 직업계고 유학생 관련 교육부·지방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('25.11.)
- ▶ **국회입법조사처 주관**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('26.1.)

□ 미성년 외국인 학생 유치 관련, 아동인권 유관기관 및 관계 부처가 제기하는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유학생 모집시 취업비자 발급 가능 등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고등학교 진학이 국내 취업과 연결된 통로가 되어 불법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 우려
- 타의에 의한 입학과 노동시장 진입 등 외국인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 발생 우려, 타국에서 홀로 유학하는 나이 어린 외국인 학생의 다양한 위험 노출 우려
- 이로 인해 UN 아동권리협약, 국제노동기구(ILO)협약에 따른 국제 사회로부터 아동권리 및 인권 침해 가능성 지적, 국제사회에 알려질 경우 국가간 통상협정에도 영향을 주어 국가적 피해가 우려
- 아동 유인, 기망 위험, 아동의 강제노동, 가족분리 우려 등 문제점이 확인되고, 「인신매매방지법」의 인신매매로 보여질 우려

담당 부서	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	책임자	과 장	이향숙 (02-2110-4070)
	체류관리과	담당자	사무관	용창식 (02-2110-4062)